

[표시광고분쟁] 1+1 할인행사 가격 거짓, 과장 광고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
두59215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형마트에서 1+1 할인행사 제품인 참기름의 경우 20일 전 판매가는 4,750원이었는데, 1+1 할인행사 기간 중 판매가를 9,500원으로 표시한 사안. 다른 1+1 행사제품도 유사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1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사건 1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1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광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시정명령, 경고 및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광고 전과 비교하여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나. '1+1 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2.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도록 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가.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판매가격 할인 등에 대해 광고한 행위

나.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한정된 기간에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

3.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표시광고분쟁, 바이럴마케팅, 지재권분쟁,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